

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	보 도 자 료	9. 9.(월) 조간
 관계기관합동	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총경 박종천, 경정 호육진(02-3150-2152, 2152)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킴이추진단 교통안전팀장 이성민(044-200-2555)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윤영중, 사무관 김태윤(044-201-3863)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정윤한, 사무관 권순관(044-205-4219)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 우진구(033-479-5081)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장 김상국(054-459-7230)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장 김현국(054-811-2630)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장 안성준(02-3702-8685)	

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73명!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
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『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』 운동
추진으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먼저인 선진교통문화 확산

- 우리나라의 최근 5년('14년~'18년)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,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.7%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.7%이다.
 - 특히, 2018년은 2014년에 비해 보행자 사망사고가 22.1% 감소(1,910명 → 1487명)했으나,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11.3% 감소(388명→344명)하는 데 그쳤다.
 -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*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.
- * '14년 388명 → '15년 370명 → '16년 389명 → '17년 374명 → '18년 344명
- 이에, 정부 합동으로 보행자 사고가 증가*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,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『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』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한다.

* 월평균 보행사망자 현황: △(1~8월) 121명 △(9~12월) 165명

- 주요 해외 교통 선진국의 보행자 교통문화를 살펴보면,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, 프랑스·독일·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.
- 우리나라도 『도로교통법』 제27조 제1항에서 ‘모든 차의 운전자(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)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.’라고 규정하고 있지만,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.
 - － 전체 보행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하는 보행자의 비율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2.8% 증가(20.3%→23.1%)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한편, 이번 슬로건은 『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』이며,
 - － 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‘보행자 존중과 배려’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,
 - －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배려 문화가 정착된다면 앞으로 모든 도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.
- 이에 따라,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월 경찰청·국토부·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도로교통공단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도로공사, 손해보험협회, 녹색어머니회,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.

- 이번 홍보는 전국 지역 경찰관서와 자치단체 등 교통안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다발 장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며
 - 국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, 버스 정류장,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.
 - 아울러,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나,
 -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차량을 발견한다면 영상을 촬영하여 “스마트 국민제보”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익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
 -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 배려 문화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- ※ '18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공익신고 11,934건(범칙금 6만 원, 벌점 10점)
- 또한,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‘횡단보도 통행 시’ 뿐만 아니라 ‘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’까지 확대하고
 - 교통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다음 통행하도록 할 예정이다.

【도로교통법 개정안】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일반 도로	보행자가 <u>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</u>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(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)	보행자가 <u>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</u> 도 운전자 일시정지 (윤후덕 의원, '17. 8. 18. 발의)
보호 구역	명시규정 없음	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(주승용 의원, '17. 8. 10. 발의)

□ 정부는 이번 『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』 교통문화 운동을 통해

- ‘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’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,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한 사람, 한 사람이 따뜻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붙임 1. 최근 5년('14~'18년) 간 횡단 중 보행자 사고 현황

2. 홍보 영상, 포스터, 현수막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
교통안전과 경정 호욱진 (☎ 02-3150-21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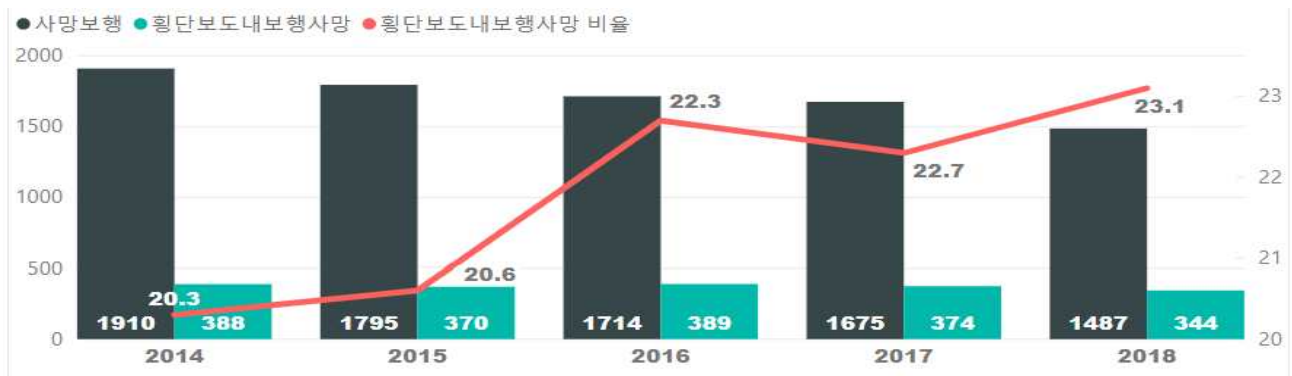
붙임 1 최근 5년('14~'18년) 간 횡단 중 보행자 사고 현황

○ 보행 중 사망자 현황



구 분	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전체 사망자(명)	21,641	4,762	4,621	4,292	4,185	3,781
보행 중 사망자(명)	8,581	1,910	1,795	1,714	1,675	1,487
비 율(%)	39.7	40.1	38.8	39.9	40	39.3

○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자



구 분	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보행 중 전체(명)	8,581	1,910	1,795	1,714	1,675	1,487
횡단보도 통행 보행자(명)	1,865	388	370	389	374	344
비 율(%)	21.7	20.3	20.6	22.7	22.3	23.1

붙임 2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

○ 포스터



○ 현수막



제27조(보행자의 보호)

-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(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.)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.
-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.
-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